1. 납부자

가. 업체명 : ㈜에어로닉스

나. 대표자 : 오혜영

다. 사업자등록번호: 721-81-00***

라. 주소 :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, B동 1601호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

2. 납부할 금액: 1,395,260원

가. 원금 : 1,209,500원

나. 판결이자 : 128,160원(2020. 8. 12.(화) 기준)

* 기준일 이전 납부 원할 시 연락바랍니다.

다. 송달료 : 57,600원

3. 수입과목: 계약정산액(계약번호: 2017-***-0675)

4. 납부기한 : 2020년 8월 12일

5. 납부방법: 계좌입금

가. 입금계좌번호 : 농협은행 034-01-030382

나. 예금주명 : 방위사업청

6. 납부관련 문의 :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(02-2079-6752)

◉소방청공고제2020-100호
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9일

소 방 청 장
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3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복잡,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- 2. 주요내용
 - 가.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(안 제5제3항)
 - 나.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(안 제6조제1항)
 - 다.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(안 제9조제3항)
 - 라.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10조제1항)
- 3. 의견 제출
 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
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 - 1) 전자우편(이메일): assa44@korea.kr
 - 2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 - 3) 팩스: 044-715-7621
- 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및 소방청 홈페이지 (http://www.nf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●소방청공고제2020-101호
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9일

소 방 청 장
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,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- 2. 주요내용
 - 가.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(안 제2조)
 - 나.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, 지진분리이음(장치)의 성능기준을 구체화, 버팀대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,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(OFFSET)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 - 다. 건축구조기준 적용,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,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(안 제3조의2)
 - 라.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(안 제4조)
 - 마.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(안 제5조)
 - 바.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(배관 슬리브)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 으로 명확히 함(안 제6조)